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

(사)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정관

1969.11.11	제정	1970.11. 5	변경
1971. 4.12	변경	1972. 5.15	"
1973. 7.21	"	1974. 7.19	"
1975. 8.12	"	1976. 7. 6	"
1980. 3.19	"	1980.11.20	"
1984. 2.10	"	1988. 3. 3	"
1989. 8. 5	"	1989.12.23	"
1990.12. 7	"	1993.12.15	"
1993.12.28	"	1994.12. 8	"
2001. 6.22	변경	2003. 3.20	"
2003. 7.29	법률	제6947호	
2003.10.30	변경	(교육부장관)	
2004.12. 9	변경	(교육부장관)	
2016.12. 7	변경	(교육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법률 제6947호) 에 의한 퇴직교원평생교육 단체로서 청소년 선도,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한국교육삼락회(이하 “교육삼락회”라 한다)라 한다. 교육삼락이라 함은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을 뜻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 둔다.

제3조의 2(시·도 지회 조직등) ① 교육삼락회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두며, 각 지부에는 별표3에 표시된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 ② 시·도 교육삼락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관계 규정을 준용 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가 그 사업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육삼락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밖에 삼락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교원(사립학교교원포함)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자문회원 :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자문을 받고자 위촉한 자
3. 명예회원 :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특별회원 : 이 법인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기관, 단체 및 개인(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금액은 시·도 교육삼락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 이 법인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이상 5인이내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이상 30인이내
5. 감사 2인
6. 이사회에 결의로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 중앙지도위원 약간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시·도 순에 따라 별표 1에 의한다.

②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시·도순에 따라 별표 1에 의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상임이사로 하고 당연직이사는 시·도 교육삼락회 회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별표1에 의하여 해당지역 교육삼락회에서 선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⑥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12조(회장단의 임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각 시·도 교육삼락회 이사회에서(정회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제2항의 임시총회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부회장이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상임부회장이 사회하거나 또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임한다.

제19조(총회의결 재척사유) 회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및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회의 가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시·도 교육삼락회 납입금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5. 정관 시행세칙 변경 및 지회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사회하되 그도 불가능할 때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임한다.
- ④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상임집행위원회

제25조(상임집행위원회 기구)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울교육삼락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및 각 전문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각 전문분과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6조(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 할 안건
2. 회장 지시사항과 이사회 의 위임사항
3. 자문위원과 중앙지도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7 장 중앙지도위원회

제27조(기능) 이 법인의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로 중앙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위원 위촉) 이 법인 회원 중 상임집행 위원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29조(기구) 중앙지도위원회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별로 위원회를 둔다.

제30조(정원) 지도위원은 각 위원회 별 30명 내외로 한다.

제 8 장 사무처 및 연구소 설치

제31조(사무처 및 연구소 설치)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교육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32조(사무처 직제)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임직원의 보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제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재정) ① 이 법인의 재정은 시·도 교육삼락회에서 납부하는 시·도 교육삼락회 연회비와 시·도 교육삼락회 분담금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수탁 기부금의 80% 이상을 직접 교육목적 사업에 지출한다.

② 시·도 교육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도 교육삼락회에서 이 법인으로 납부하는 납부금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며, 지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지회에서 정한다.

④ 이 법인 및 시·도 교육삼락회의 재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6조(회계연도)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제35조 제1항의 기부금 모금 실적과 사용 내역을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7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8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이하 “한국교육삼락회”라 한다)는 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원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회원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지원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원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임원은 이 지원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지원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연도별 당연직 부회장 및 감사 추천 해당 시·도지회

2001~2026년도

지 부	당연직부회장(2년)	총회 개최지 부회장(1년)		감사(2년)	
서 울	상임	2006	2023	2008~2009	
부 산	2027~2028	2007	2024	2009~2010	
대 구	2029~2030	2008	2025	2001	2010~2011
인 천	2031~2032	2009	2026	2011~2012	
광 주	2001~2002	2010	2027	2001~2002	2012~2013
대 전	2003~2004	2011	2028	2013~2014	
울 산	2005~2006	2012	2029	2002~2003	2014~2015
세 종	2025~2026		2022	2024~2025	
경 기	2007~2008	2013	2030	2015~2016	
강 원	2009~2010	2014	2031	2003~2004	2016~2017
충 북	2011~2012	2015	2032	2017~2018	
충 남	2013~2014	2016		2018~2019	
전 북	2017~2018	2001	2020	2019~2020	
전 남	2015~2016	2002	2019	2004~2005	2020~2021
경 북	2019~2020	2003	2017	2005~2006	2021~2022
경 남	2021~2022	2004	2018	2006~2007	2022~2023
체 주	2023~2024	2005	2021	2007~2008	2023~2024

※ 2018 전남 당연직부회장과 총회개최지 부회장의 중복으로 전북과 순번교체

※2015.3.10. 세종시 추가

※ 감사 2인의 동시 임기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 추천 감사의 임기는 2001년 1년간으로 함.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1969.10.11.>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회 장	조 재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0	2년	
부회장	홍 병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81-16	2년	
"	최 윤 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 243-2	1년	
이 사	조 경 래	인천직할시 남구 송의동 33-10	2년	
"	이 상 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34-7	2년	
"	김 영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24-1	1년	
"	최 병 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00	1년	
"	이 근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2	1년	
감 사	이 척 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9	2년	

별표 3

지사(분사무소)의 설립 및 소재지

지부	지사 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삼락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대구교육삼락회	대구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인천교육삼락회	인천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삼락회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전교육삼락회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삼락회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도	강원교육삼락회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경기교육삼락회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충북교육삼락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충남교육삼락회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북교육삼락회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북교육삼락회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남도	경남교육삼락회	경상남도 창원시